운 송 계 약 서

본 계약서는 ㈜원익아이피에스(이하"갑"이라 칭함)과 ㈜광진종합물류(이하 "을"이라 칭함) 간에, "갑"이 의뢰하는 수출·입 화물 운송물량에 대한 "을"의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1 조 [운송대행 및 범위]

- 1) 운송대상은 "갑"이 "을"에게 요청하는 수출입 화물로 한다.
- 2) "을"은 "갑"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"갑"이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장소로 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"갑"이 지정하는 장소, 일시까지 "을"의 책임 하에 화물의 손상없이 안정된 상태로 운송, 인도해야 한다.

제 2 조 [운송 및 관리]

- 1) "갑"이 "을"에게 운송을 요청할 경우, 전일 요청을 원칙으로 한다.
- (단, "갑"의 요청으로 긴급을 요할 시, "갑"은 해당 사유 발생 즉시 운송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, "을"은 이러한 "갑"의 작업 의뢰 시 성실히 협조한다.)
- 2) "을"은 본 계약 대상 화물의 상차, 운송/운행, 하차 등의 운송과정 전반에 걸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, 해당 운송 업무에 대한 운송노선, 운송기일, 도착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
- 3) "갑"은 "을"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지시서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확인하고,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3 조 [안전관리 책임]

"을"은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자로서,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하며, 운송 등 업무수행 중에 "을"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("을"의 종업원 또는 "을"의 고용자와 제3자의 피해 등)에 대하여는 "을"의 책임 하에 사고를 처리 완료 하여야 한다.





제 4 조 [보고의 의무]

"을"은 수출·입 화물 사고발생 즉시 "갑"에게 구두(서면) 보고하고, 신속한 사고처리를 하여야 하며, 처리상황을 "갑"에게 수시로 보고 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5 조 [운송료 및 지불]

- 1) "갑"이 "을"에게 지불하는 운송료는 수출·입 화물운송 요율표(별첨1)에 의한다.
- 2) 계약기간 중 운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객관적 근거에 기한 운송료의 급격한 변동 요인(유가의 변동, 물가상승 등)발생시, "갑"과 "을"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 서면 합의 시 계약 운송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- 3) 수출·입 화물운송 요율표(별첨1)에 구간이 명시되지 않은 운송이 발생했을 경우, 운송료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 서면합의로 결정하기로 한다.
- 4) "을"은 "갑"에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운송료를 청구한다.
- 5) "갑"은 "을"이 제출한 운송료 청구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, 익월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.
- 6) "갑"이 "을"에게 운송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여 "을"이 해당 출고지에 배차하였으나 본 계약관련 "갑 유청으로 해당 모들이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을 경우, "갑"과 "을"은 합의를 통하여 발생비용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한다.

제 6 조 [손해배상]

- 1) 운송 중 "을"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제품이 손실된 경우(파손, 분실, 훼손, 망실, 오염 등) "을"은 화물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가격을 기준으로 상관례에 의한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"갑"은 "을"에게 지급할 운송료(계약이행대가)중에서 손해배상채권등 "갑"이 "을"에 대해 가지는 채권금액을 우선 공제(상계)후 그 차액을 지급 할 수도 있다.

제 7 조 [계약상 지위의 양도금지 등]

"갑"과 "을"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, 의무의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, 이전하거나 하도급, 담보 제공,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없다.

㈜ 광 진 종 합 물 류

본사**☎**(031)495-5001 공항**☎**(032)744-8520

부산☎(051)441-6353

팩스☎(031)491-8580

KWANG JIN LOGISTICS CO., LTD

(수출,입보세운송/보세창고업/복합운송)

광 진: 제 13-0101호

수 신 : ㈜원익아이피에스

참 조 : 김 효진 님

제 목 : 항공 수입 운송료 견적의 건

1. 귀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2. 페사는 관세청승인 복합/보세운송업체로서 귀사의 수입 물품에 대한 운송 견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이 -

가. 운송료 견적서(인천공항->원익아이피에스)

금액 : 원

구 분	착 지		
중량 / 차량	시화	평택	日立
1,000KG 0 5}	35,000	60,000	
추가 500KG 당	20,000	20,000	
1톤 차량(독차)	60,000	110,000	
2.5톤 차량(독차)	120,000	190,000	
5톤 차량(독차)	140,000	230,000	
11톤 차량(독차)	200,000	270,000	
독차차량 추가진행시 건당	10,000		

나. 상기 견적: 부가세 별도

다. 휴일작업료: 15,000원/1일(부가세별도)

라. 부득이한 상황발생으로 운송료 변동을 요할때에는 상호협의로 결정합니다.

마. 항공수입 업무 담당자: 김 남규 소장 (TEL: 032-744-8520 , FAX: 032-744-8525)

